

#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정인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32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9년 1월 21일

발 의 자 : 이정인 의원(1명)

찬 성 자 : 홍성룡, 김경영, 김태호,  
김소양, 이준형, 노승재,  
전병주, 김혜련, 문장길,  
김경우, 오현정, 김화숙,  
이영실, 봉양순, 이병도,  
박순규, 김용연, 김동식,  
서윤기 의원 (19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의 단서 조항은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의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참전유공자의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바, 이는 상위 법률에서도 제한 규정이 없음.
-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서 “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(자치구 조례를 포함한다)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” 라는 규정은 과도한 제한 규정으로써 법익의 실익이 없고, 해당 조례의 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조례 제5조제1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.

## 2. 주요내용

가.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(자치구 조례 포함)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지 조항을 삭제함.(안 제5조제1항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사항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**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5조(참전명예수당) ① 시장은 제 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(이하 “수당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 <u>다만,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(자치구 조례를 포함한다)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제5조(참전명예수당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<u>&lt;단서 삭제&gt;</u>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